

성남금토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8.11.(화)]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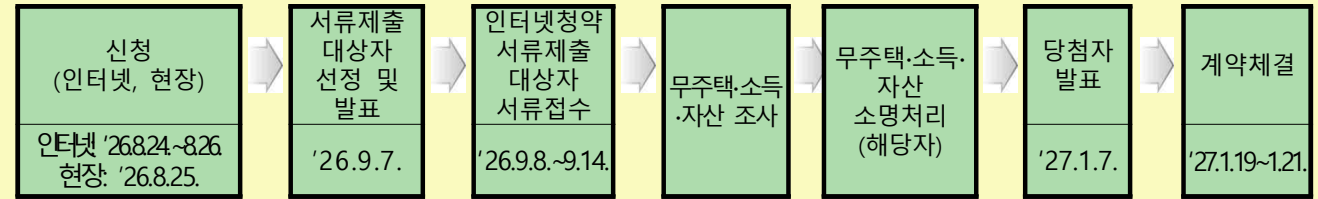
-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금토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이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성남금토 A-4블록 신혼희망타운(총 1,150세대) : 공공분양(766세대), 행복주택(384세대-**금회모집 187세대**,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 192세대, 가정어린이집 5세대)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8.1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조사가 준일로 합니다.(즉,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는 해당 산정시점에 조회된 것으로 적용합니다.)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남금토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8.1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2)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처리** 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태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최대 거주 기간 (년)	입주 예정 시기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총 계			187								
55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	55.83	25.7420	8.6855	44.6837	134.9412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10~14	'27.11월	
55AS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3									
55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9	55.99	25.8709	8.7104	44.8118	135.3831				
55BS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10									
55C	신혼부부·한부모가족	42	55.99	24.7909	8.7104	44.8118	134.3031				
55CS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2									
55D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3	55.98	25.5872	8.7089	44.8038	135.0799				
55E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	55.92	26.2851	8.6995	44.7557	135.6603				
55F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	55.83	26.0020	8.6855	44.6837	135.2012				

- 성남금토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은 총 건설호수 384호 중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 192호를 제외한 호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급호수 192호 중 5호(55B 410동 102호, 55C 405동 104호, 55C 406동 106호, 55C 407동 106호, 55C 408동 106호)는 입주 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고 예정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55AS, 55BS, 55CS)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 가스쿡탑3구, 음식물탈수기, 비데, 환기유니트, 레인지후드, 홈네트워크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스마트홈 생활정보기, 세대단말기(스마트월패드 10인치), 디지털도어록

■ 임대조건

공급 영역	기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5%)	잔금 (95%)				
55A, 55AS	192,400	9,620	182,780	785,630	(+) 94,000	286,400	315,630
					(-) 162,000	30,400	1,258,130
55B, 55BS	192,800	9,640	183,160	787,260	(+) 94,000	286,800	317,260
					(-) 162,000	30,800	1,259,760
55C, 55CS	192,800	9,640	183,160	787,260	(+) 94,000	286,800	317,260
					(-) 162,000	30,800	1,259,760
55D	192,800	9,640	183,160	787,260	(+) 94,000	286,800	317,260
					(-) 162,000	30,800	1,259,760
55E	192,800	9,640	183,160	787,260	(+) 94,000	286,800	317,260
					(-) 162,000	30,800	1,259,760
55F	192,400	9,620	182,780	785,630	(+) 94,000	286,400	315,630
					(-) 162,000	30,400	1,258,130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8.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처리됨)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452,897원 이하	110%	7,626,151원 이하	130%
3인	8,168,429원 이하	100%	9,802,115원 이하	120%
4인	8,802,202원 이하	100%	10,562,642원 이하	120%
5인	9,326,985원 이하	100%	11,192,382원 이하	120%
6인	9,906,263원 이하	100%	11,887,516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산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	2인	0인	13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30%	379,000,000원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3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40%	413,000,000원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7,626,151원 이하	8,212,778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10,618,958원 이하	11,435,801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11,442,863원 이하	12,323,083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12,125,081원 이하	13,057,779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12,878,142원 이하	13,868,768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과천시·의왕시·용인시·광주시·하남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인천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8.11.)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 란?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과천시·의왕시·용인시·광주시·하남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인천광역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구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6.8.24.(월) 10:00 ~ 8.26.(수) 16:00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26.9.7.(월) 15: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26.9.8.(화) ~ 9.14.(월)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1팀 성남금토 A-4블록 신호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6.9.14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접수불가	'27.1.7.(목) 15: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27.1.19.(화) 10:00 ~ 1.21.(목) 17:00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27.1.19.(화) 10:00~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218호 (임대주택 고객상담실)
[현장접수] '26.8.25.(화) 10:00~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105호 대강당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 신청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청약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공고문 5.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6.9.14.(월)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조회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같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6.8.24.(월) 10:00 ~ 8.26.(수) 16:00]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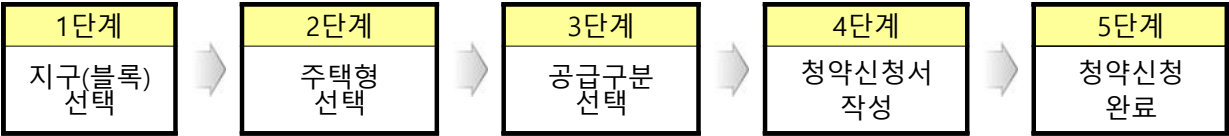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인증서 로그인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8.24.(월) 10:00 ~ 8.26.(수)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입력해야 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체결안내문, 잔금안내문, 입주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이 해당 주소지로 발송되오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로 우편물수령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SMS 수신동의 및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6.8.24.(월) 10:00 ~ 8.26.(수) 16:00]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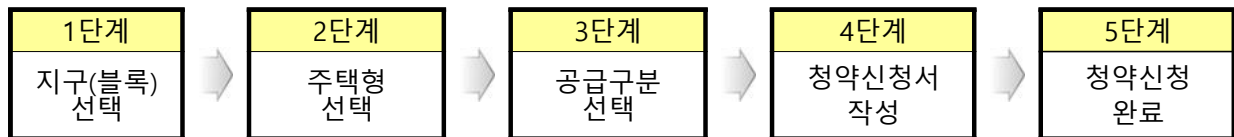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 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 유의사항(인터넷PC 청약방법 유의사항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청약 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6.8.24.(월) 10:00 ~ 8.26.(수)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 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계약내역 조회, 보증금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청약접수 방법(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PC·모바일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기 간	'26.8.25.(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약 도	
장 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105호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대 중 교통편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앞 (버 스) 오리역 하차 - 일반버스 : 60, 101, 116-3, 30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구 비 서 류	□ 아래 서류와 [5.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시 접수 불가)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첨3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할 것)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첨3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9.7.(월) 15: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우측상단 ≡(메뉴) 클릭 → 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6.9.8.(화) ~ 9.14.(월) ('26.9.14.(월)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5.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을 확인하여 제출

* 우편발송주소 : (우편번호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성남금토 A-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항" 반드시 기재)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8.1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시하여야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함.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1)	• 작성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첨1)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함(신청자 서명 필수)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1)	• 작성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1통

	(단, LH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LH임대주택 거주로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첨1)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별첨2)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별첨2)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 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 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⑧ 중증장애인 배점을 받으실 경우 [주거약자용 신청자에 한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7. 1. 7.(목) 15: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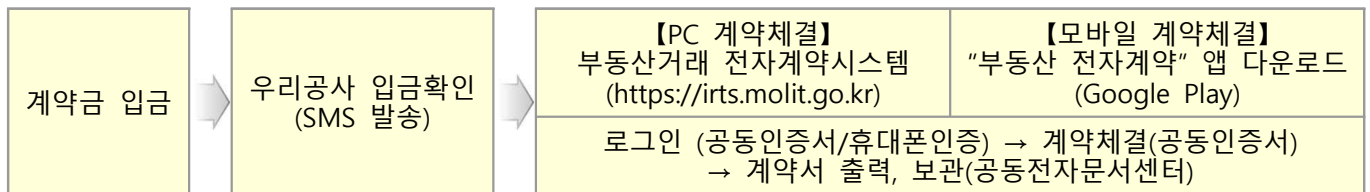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클릭
-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2027. 1.19.(화) 10:00 ~ 2027. 1.21.(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2027. 1.19.(화) 10:00 ~ 16:00]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 계약자 도장(*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만 인정 (※ 단,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2020.12.21. 이후 발급한 신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를 함께 구비할시 신분증으로 인정	• 배우자가 대리계약 시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첨3),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 주소 직접 변경하는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다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head> <tbody>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 </tbody> </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소득·자산 등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일 전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위약금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검증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소변경 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 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신청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구 내·외부 여건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18(2025.12.10.)호로 승인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남금토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제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에너지 사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경사로 및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북측에 군사시설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 금토천, 외동천이 위치하고 있고, 지구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입주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량, 수질에 따라 지구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수량이 적거나, 악취가 나거나 수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오수중계펌프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 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성남시청으로부터 반경 약 3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경부고속도로(대왕판교IC), 용인서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및 국지도23호선(대왕판교로)과 인접해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와 인접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변 일부에 방음벽(H=3~18m)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IC 하부의 달래내로가 지구 동서를 연결하며 대상지 인근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인접해 있고 북동측 약 3km 인근에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서울공항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4.0km 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6조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6구역에 해당합니다.
- 본 단지 인근 반경 약 4km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비행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 본단지 동남측 반경 약 0.7km 이내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경부고속도로(대왕판교IC), 용인서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및 국지도23호선(대왕판교로)과 인접해 있으므로 관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외 본단지 동남측 반경 약 2km 이내에 ‘폐기물소각시설’이 있습니다.
- 사업지구 외 본단지 북서측 반경 약 6km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후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개발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한전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가로등, 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 시설물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위치에 설치(또는 예정)되었음에 따라 다른 위치로 이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학생들이 통학 시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별도 육교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각종 안내표지판(대형 포함),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휼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및 단지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형여건 등에 따라 아파트 내·외부 구간에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북측으로 묘지가 위치하여, 일부 세대에서 묘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높이 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용지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불빛, 악취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아파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과 행복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분양주택과 다르게 기본평면으로 공급됩니다.
- 어린이집의 원아모집 및 운영 관련사항은 추후 관계법령 및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 유효높이(B1F, B2F)는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의 높이가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제한됩니다. (단 B3F의 유효높이는 2.3M입니다.)
- 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하1층(404동, 405동, 406동, 409동, 410동 인근)과 지하2층(401동, 404동, 405동, 406동, 408동, 409동, 410동 인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지하1층에 388대, 지하2층에 583대, 지하3층에 409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6대이며, 1,386대 중 35대는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주차장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 함)으로 설계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지하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마다 위치가 다르게 설치됩니다. 또한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일부 세대만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입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계절창고의 환기, 결로방지를 위한 장비가동(팬, 제습기)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에는 온습도에 민감한 물품은 보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 천장은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및 펌프실, 환풍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1층~지상2층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휴게공간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창호 외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내 각층별(B3F, B2F, B1F) 트랜치가 없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유지관리시 물청소는 최소화하고 기계식 청소를 권장하며, 강우시 또는 차량 유입수에 의해 일부 구간에 일시적인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 및 자전거보관소 등은 관련기준(세대수)에 맞게 산정하였으며 추가 설치 불가합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401동, 402동 하부에 상가(근린생활시설)가 위치하여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의 위탁 운영이 있을 수 있으며, 협의의 내용에 따라 운영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주민카페, 스마트멀티룸 등)에 내부 시설물(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 동 번호, BI(Brand Identity)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

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설 설치 여부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로부터의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는 2개소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 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적용하여 배출량 및 처리비용을 관리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 동별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필로티,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울타리 및 담장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조경 식재 및 시설물(어린이 놀이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조감도 및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각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 주차장 환기팬, 유인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 공기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지하주차장 및 지상층 환기구 주변에 소음진동, 먼지, 바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및 단지 공용설비 서비스 운영을 위한 통신회선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405동, 406동, 407동, 408동에는 스카이 라운지 및 주민카페가 설치될 예정이나 해당동 외의

입주민은 공동 현관문 등 보안 및 관리 문제로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07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지하주차장 5개소와 옥상 6개소(401동, 403동, 404동, 406동, 408동, 411동)에, 옥외안테나는 옥상 6개소(401동, 403동, 404동, 406동, 408동, 411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업자 협의결과에 따라 위치 및 수량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401동과 407동사이 지하층)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는 401동, 402동 및 문주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출입구에 설치되는 차량출입통제장치는 세대 입주자와 판매시설 방문자가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속한 주차유도와 주차가능공간 및 차량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한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 지하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냉풍,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제습기가 설치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전동 지붕층에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가(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태양광발전 집광판으로 인해 일부세대 눈부심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얼굴인식 공동현관기(로비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정보수집에 동의한 세대에 한해서 비접촉 얼굴인식 원패스시스템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지 내 공용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회선 사용료 등이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전면 또는 인접위치에 승강기 구조물, 계단실, 부대시설 및 기타 공용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망권, 개방감, 일조 및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팸플릿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보행통로 입구 2개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 건물옥상조경은 [401동 3층(304호~307호 해당), 402동 2층(201호~202호 해당)]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대는 계약 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D.A의 용도는 화재시 작동하는 제연시설로써 평상시 작동하지 않으므로 소음, 비산먼지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 아래의 부속시설 등은 각 동별 세대의 하부층에 있거나 인접한 위치에 있어, 생활에 일부 불편(소음, 진동, 차량진출입, 시야간섭, 시야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속시설 명	부속시설 위치	비 고
문 주	401동 4호세대 남측(1F)	
종합보육센터	401동 1~2F(1~7호세대 하부)	
근린생활시설(1~6호)	401동 1F(1~3호세대 하부)	
근린생활시설(7~12호)	402동 1F(1~3호세대 하부)	
실내놀이터, 외부계단(E/V)	403동 북측(B2~1F)	
피트니스센터	405동 동측(B1F)	
재활용품보관소-1	404동 1호세대 북측(B1F)	
스마트멀티룸-1, 장난감은행	406동 B1F(2~3호 세대 하부)	
작은도서관	406동 1호세대 동측(B1F)	
근로자휴게실, 스마트멀티룸-2, 파티룸	407동 B1F(1~3호 세대 하부)	
관리사무소	407동 1호세대 동측(B1F)	
열교환실, 펌프실, 물탱크실	407동 1~2호세대 동측(B3F)	
우수저류조, 전기실, 발전기실	407동 남측~401동 북측(B3F)	
연결 Bridge + 외부계단,E/V	407동 동측 1F 바닥(1~4호 해당) ~ 401동 북측 2F 바닥 연결	
공유오피스1.2, 주민회의실	408동 B1F(2~5호 세대 하부)	
공유주방, 시니어카페	408동 1호세대 동측(B1F)	
스마트멀티룸-4, 팝업스토어	409동 B1F(3~5호 세대 하부)	
지하주차장 출입구	409동 B1F(3호 세대 하부)	
런드리존	409동 1호세대 동측(B1F)	
주민카페/스카이라운지	405~408동 17-18F/405~408동 19F	
지하주차장 램프#2	410동 B1~B2F(1호 세대 하부)	
제연헬룸	전체동(401~411동) 1F,	화재시에만 가

	B1F 위치	동
--	--------	---

- D.A (제연덕트) 각 동 위치(단지배치도 참조)

401동	402동	403동	404동	405동	406동
1.4.6호 주변	1.4호 주변	1.2호 주변	1.5호 주변	1.7호 주변	1.7호 주변
407동	408동	409동	410동	411동	
1.7호 주변	1.7호 주변	1.2, 5.6호 주변	1호 주변	1.6호주변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세대는 분양세대에 적용되는 옵션사항이 없으므로 세대 내 마감재, 가구, 설비 및 디자인 구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 중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를 위하여 최초 설치된 마감재 및 가구 등이 퇴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현관, 화장실,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경량벽체는 칸막이 구조로, 인접한 거실 또는 침실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 욕실에 AD/PD가 위치하여 욕실 및 인접한 실에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세탁실) 내에 우수선홈통이 설치되어 강우 시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는 봉투바름(테두리바름)으로 시공되어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5C타입의 현관벽체(세탁실 측)는 경량벽체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니므로 보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없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하며, 수납공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전 타입의 주방가구 상판 뒷선반은 ㄱ자 형태로 설치되며 가스대 부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55E타입은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55E타입의 주방가구는 쿡탑위치가 변경되어 개수대 옆 일자 형태로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은 여닫이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평상 시 실외기 외기통풍구 루버 밀폐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일부세대를 제외한 실외기실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는 바닥타일보다 높게 설치되므로 실외기실 이용간 불편할 수 있음. 피난구가 설치된 직하층에는 피난상황 발생 시 피난사다리 전개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시 피난이 가능하도록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 직하부에 필로티 및 부대시설 등이 위치하여 하향식피난구 전개가 곤란한 일부 저층세대(2, 3층)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단, 관련 소방법에 따라 저층부 세대 (2, 3층)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해당 공간의 창호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TV, 벽걸이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식탁 및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귀, 수급·생산불능 및 제조회사의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쿡탑종류와 무관하게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가스쿡탑 주위에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주방가구 또는 PD에 점검구 또는 점검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우수용,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드레인 및 배관의 위치와 개수 등이 다릅니다.
- 세대 욕실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자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세탁실 실외기실은 비난방 공간으로 겨울철에 창문개방, 에어컨 실외기 그릴 개방 등에 의한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결,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 침실 등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 배관은 거실,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므로 환기용유니트와 덕트가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주방 등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전열교환기의 환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를 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소모품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
- 일부 주택형은 세탁실 및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탁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며 사용 시 주변 시설물(세탁기, 건조기, 문 등)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과정 중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공간을 감안하여 전개 시 최대 길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창을 열지 않고 실외기 가동 시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에어컨 냉방기능 저하 등 작동불량, 스프링클러 작동 등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진동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쿡탑과 가스차단밸브 및 배관 사이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냄비 사용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양변기는 관련 법에 따라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관련

- 성남금토 사업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시 지구내 학교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통학 구역·학교설립계획·학급수 및 학생배치계획은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인근학교 현황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초등학생은 (가칭)금토초(27.3월 개교예정,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이후 '금토초'로 교명 확정)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 중학교는 판교중학교(성남 관내 4개 중학교(분당, 수정·중원, 판교, 위례) 중 판교중학교 내 중학교)에 해당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군(구)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향후 지구 내 설립요인 발생으로 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중학교 학군(구)은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는 성남 관내 기존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학생 통학로)는 당초 승인된 교육환경평가 조치계획에 의해 반영되었으며, 입주 후 인근 A1, A2블록 거주 학생들의 통학로의 용도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로 해당 등급 표시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	(도로, 철도)에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태학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토.성토량(땅깎기,흙쌓기를 위한)최소화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자원순환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물순환관리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순환관리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생태환경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생물서식공간(비오톱)조성	-
실내환경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교통 및 보행환경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성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현장관리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유지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ZEB	5등급
주거성능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고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
주거환경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방범 및 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교통 및 주차계획	주차공간 추가 확보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성남금토 A-4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극동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코오롱글로벌(주) (주)대저건설	-	(주)ITM건축사사무소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SI그룹건축사사무소 (주)건일씨엠건축사사무소 (주)대성씨엠
		전기	기룡이앤씨(주) 해오름건설(주)		
		통신	부민통신(주) 유애펜크(주)		
		소방	(주)유인엔지니어링 (주)한양건설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갑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세대단말기 높이 바닥에서 1.2m 이내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청각장애인
	세대별 시각경보기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m 높이 내외 설치)	
	좌식 샤워시설 설치	
	야간센서등(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침실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신청대상)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②청각장애인, ③시각장애인, ④상이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신청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원
-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청각장애인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편의증진 시설 제공대상은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공급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구(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불가)를 의미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팜플릿 배부처 **내경기남부지역본부 218호 임대주택 고객상담실**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전용전화 : 031-250-8472 (※ 2026년 8월 27일까지 가능, 이후 연결불가)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LH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bloglh>)
 - 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임대주택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내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105호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2026. 8. 11.

